

# 「건설업 윤리 및 실무교육」 안내

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3에 따라 건설업 신규 등록자 및 법령을 위반한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건설관련 법령·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기업 윤리 함양을 위해 「건설업 윤리 및 실무 교육」 개설

## ■ 교육대상

- 의무교육 : 건설업 신규등록자(추가 면허등록 제외)
  - 2016.2.12이후 건설업 신규등록 업체 → 등록일로 부터 6개월 이내
    - ※ 건설업 등록 후 6개월이내 교육 미이수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
- 임의교육 : 영업정지처분이후 정지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건설업등록자
  - 2016.2.12이후 영업정지 처분 중에 있는 업체 → 영업정지 기간 내
    - ※ 교육이수에 따른 인센티브 : 영업정지기간 최대 15일 감경
      - ☞ 법인 대표자 수료시 15일, 등기부상 임원 수료시 1인당 5일 감경(최대 3인)
    - ※ 감경 받은 후 1년이내 다시 위반시 감경 불가
- 교육 참석대상자
  - 법인 : 대표자 또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등재된 임원 중 1인
  - 개인 : 대표자

※ 교육 관련근거 :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의 3 [시행일 : 2016. 2. 11]

- ① 건설업을 등록한 자(건설업자가 추가로 다른 업종을 등록하는 경우 제외)는 건설업을 등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 관련 교육을 받아야 한다.
-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교육 대상자 외의 건설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건설업 윤리 및 실무관련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, 이 경우 교육 이수자에 대하여 제84조에 따라 영업정지의 기간 등을 감경할 수 있다.

※ 행정처분 관련근거 : 건설산업기본법 제99조[과태료] 제12호

건설업을 신규등록 한 자가 6개월 이내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

## 2016년 교육일정

### ○ 교육일정

일 정	2016년						
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개 설 일 자	3일(금)	1일(금)	3일(수)	2일(금)	7일(금)	2일(수)	2일(금)
	10일(금)	8일(금)	12일(금)	9일(금)	14일(금)	11일(금)	9일(금)
	15일(수)	15일(금)	18일(목)	-	21일(금)	18일(금)	16일(금)
	24일(금)	22일(금)	26일(금)	23일(금)	28일(금)	25일(금)	23일(금)
		29일(금)		30일(금)			30일(금)

## 교육장소

-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회관 2층 중(소) 회의실  
(서울시 동작구 보라매로 5길 15)

## 교육내용 및 교육시간

### ○ 교육내용

과 목 명	교 육 내 용	시간(H)
건설업자 윤리경영	기업의 윤리경영 및 준법경영 등	1.5
건설산업 관련법규	건설산업기본법, 국가·지방계약법 하도급법, 시공능력평가방법 등	4.5
건설공사 안전관리	건설공사의 품질, 안전 및 환경관리 등	2
계		8시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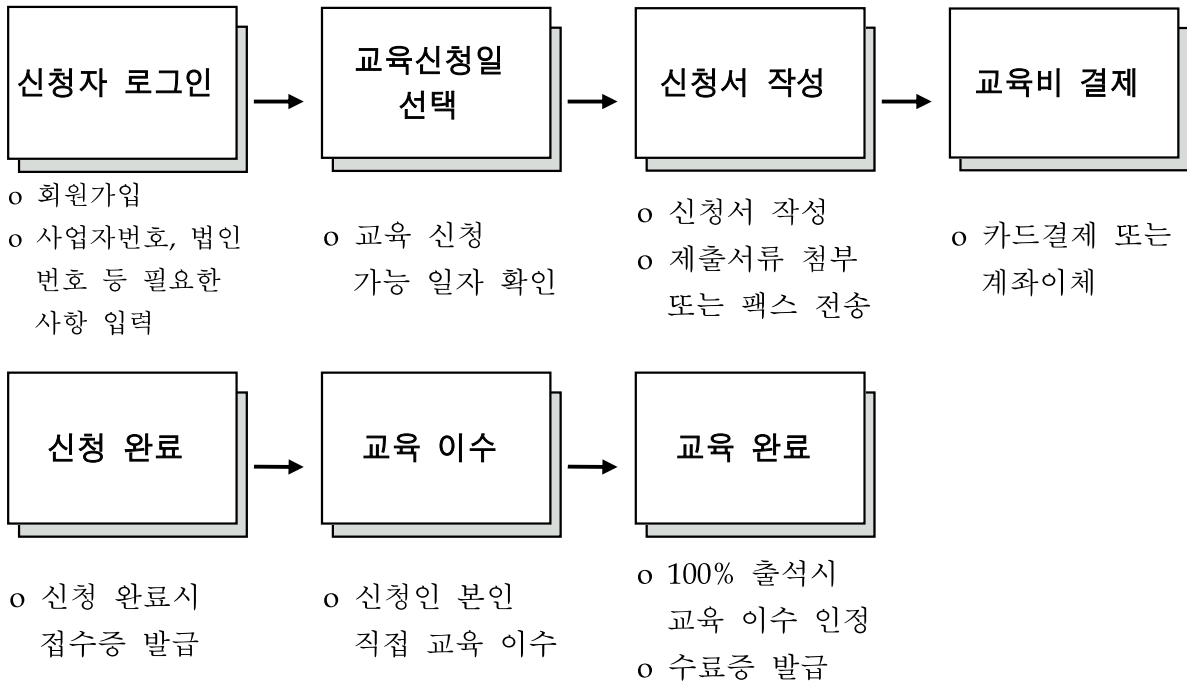
- 교육시간 : 1일 8시간 집체교육 (09:00 ~ 18:00)

## 수료기준

- 소정 출석시간 100% 출석 시 수료가능
- 대리교육자 입교 시 즉각 퇴교조치

## ■ 교육신청 방법

- 인터넷 신청 (홈페이지 : [edu.kosca.or.kr](http://edu.kosca.or.kr))



## ■ 교육비 안내

- 교육비 : 150,000원 (교재, 중식 포함)
- 납부방법
  - 계좌이체 및 카드결제 : 입금자명을 **교육자 본인 성함**으로 입금
- 영수증 발급 : 교육신청 후 홈페이지에서 계산서 발급 가능

## ■ 교육문의

-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교육센터 담당자 : 김보나 02-3284-1080

## 건설업 교육 신청서

① 성 명			
② 생 년 월 일			
③ 주 소			
④ 업 체 명			
⑤ 연 락 처	(직장)	(HP)	(E-mail)
⑥ 교 육 일 자	월	일	교 육 장 소
⑦ 직 위	<input type="checkbox"/> 대표이사 <input type="checkbox"/> 등기 임원(이사 또는 감사)		
⑧ 교 육 사 유	<input type="checkbox"/> 건설업 신규등록 <input type="checkbox"/> 영업정지 등 감면		

상기 본인은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4 및 제12조의5에 따른 건설업 교육대상자에 해당함을 확인하고, 교육 중 또는 교육이수 후이라도 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교육이수의 효력이 상실됨은 물론, 이를 이유로 교육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음을 숙지하고 교육을 신청합니다.

2016년       월       일

신청인    (서명 또는 인)

국토교통부장관    귀하

구 비 서 류

신청인 제출서류	1. 건설업등록증 사본 또는 등록수첩 사본 1부 2. 법인등기부등본(법인인 경우에 한함) 1부 및 재직증명서 1부
-------------	--